

「'25년 유망 뷰티기업 마케팅(해외박람회) 지원 사업」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홍콩 2025 서울관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서울 소재 유망 뷰티기업의 글로벌 유통망 진출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(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홍콩 2025 서울관)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, 관련 분야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. 6. 16.

서울특별시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'25년 서울 유망 뷰티기업 마케팅(해외박람회) 지원 사업
- 사업기간 : 2025. 7 ~ 11월
- 지원목적 : 유망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,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
 - 「[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홍콩 2025](#)」 서울 뷰티홍보관 운영,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상담 등을 통해 K-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및 시장 진출 지원
- 지원대상 : 수출 유망 화장품 완제품을 보유한 서울 소재 화장품 기업

<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홍콩 2025 개요 >

- 전시기간 : '25. 11. 12.(수) ~ 11. 14.(금)
- 주최사 : 인포마 마켓(Informa Market)
- 전시장소 : [홍콩 컨벤션 & 엑시비션 센터\(전체 홀\)](#), 118,900m²
- 전시품목 : 화장품 완제품, 미용기기, 패키지, 네일, 제품원료 등
- 규모 : '24년 [전시참여 2,562개社 \(47개국\)](#), [방문객 60,975명 \(119개국\)](#)
- 특징 : 세계적인 코스모프로프 시리즈(볼로냐, 홍콩, 라스베이거스, 뭄바이) 중 하나로 1996년 처음 개최, 아시아 최대 B2B 박람회로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거점 시장인 [홍콩에서 매년 11월 개최됨](#)

□ 모집개요

- 모집기간 : 2025. 6. 16.(월) ~ 6. 27.(금) 18:00까지
- 모집규모 : 총 20개 사
- 모집분야 : 일반화장품, 비건화장품, 이너뷰티, 뷰티테크
- 모집대상 : **공고일 기준** 아래 자격요건을 **모두 충족**하는 기업 (※ 붙임1 참조)
 - 지역 : 서울특별시 소재 (사업자등록증, 본사 소재지 기준)
 - 업종 : 「화장품법」 제2조의 2에 따른 **화장품업** 또는 **통신기계기구·응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뷰티테크 기업 중 완제품을 전시 품목으로 출품 가능한 기업**
 - 규모 :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의 [별표 1]에 따른 **중소기업**에 해당
-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 (구글폼 양식 제출)
 - ① (신청서식) 서울시 홈페이지 (www.seoul.go.kr) ‘고시·공고’ 란에서 다운로드
 - ② (서류제출) [구글폼](https://forms.gle/nWkTRg2zd7Z3CQdJ8)(<https://forms.gle/nWkTRg2zd7Z3CQdJ8>) 아래 번호 순서대로 하나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(※ 파일명 : 신청기업명)

번호	목 록	제출양식 / 참고사항
1	참가 신청서 & 서약서 (필수)	※ 서식 1 (제출시 PDF변환)
2	전시품목 상세서 (필수)	※ 서식 2 (제출시 PDF변환)
3	참여기업 현황표 (필수)	※ 서식 3 (제출시 PDF변환)
4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필수)	※ 서식 4 (제출시 PDF변환)
5	정량평가 및 가산점 자가진단표 (필수)	※ 서식 5 (제출시 PDF변환)
6	자격요건 증빙서류	※ 미제출 시 선정 제외
6-1	- (지역) 사업자등록증 (필수)	-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국세청 발급분
6-2	- (업종) 화장품제조업 / 책임판매업 /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등록필증 (필수)	-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분 ※ 뷰티테크기업의 경우 보유시 제출
6-3	- (규모) 중소기업인증 확인서 (필수)	- 유효기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발급분
7	정량평가 증빙서류	※ 미제출 시 항목별 최하점 부여
7-1	- 최근 3년('22~'24년) 수출 실적 증빙자료 (필수)	- 수출신고필증(관세청 발급분) 또는 수출입실적증명서(KITA 또는 KTSTAT 발급분) 등
7-2	- 최근 3년('22~'24년) 국외 뷰티 전시·박람회 참여 증빙자료 (보유시 필수)	- 전시·박람회 참가 확인서 등 증빙자료

7-3	- 지적재산권 및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 준비·역량 증빙자료 (보유시 필수)	- 산업재산권(특허·실용신안·의장 등), 해외규격인증(ISO 등), 정부인증 우수디자인(GOOD DESIGN 등), 우수기술 인증(Net-KT-EM·싱글PPM-GQ 등), 국내외 품질인증(서비스 포함) 등
8	가산점 증빙서류 (보유시 필수)	※ 미제출 시 가산점 인정 제외
8-1	- 창업 5년 이내 기업	-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이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
8-2	- 하이서울 인증기업(하이서울 기업 지정서)	- 서울경제진흥원(前 서울산업진흥원) 발급분
8-3	-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	- 친환경·천연재료 사용 여부(식품의약품안전처) - 비동물실험비건 인증(한국비건인증원 등) - 사회공헌활동이력(수익, 생필품 기부 등)
9	기업 재무제표(2023~2024년도) (필수)	-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
10	기업 카탈로그 및 제품 소개자료 (필수)	- 국문(필수) 및 기타 언어 추가 제출(선택)

- ※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 미비 시 선정에 제외될 수 있음
- ※ 유효기간이 명시된 서류는 해당 기간 내 발급된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함

□ 세부 지원사항 및 참고사항

【 서울 뷰티 홍보관(안) 】

- 부스면적 : 72㎡ (12m × 6m)
- 부스위치 : 1층 화장품 브랜드 섹터 홀 앞 복도 위치(붙임 2 참조)
※ 부스위치 및 면적은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참가규모 : 유망 뷰티기업 20개 사
- 전시품목 : 스킨케어, 메이크업, 뷰티 디바이스 등 기업당 최대 3개 품목 신청가능
- 주요내용 : 오픈형 부스 내 상품 품목/기능별 독창적 컨셉의 서울 뷰티홍보관 연출 및 공동 비즈니스 상담 공간 제공

- 참가비, 부스 입점·임차료 전액 지원
※ 기본 제공되는 비품 외 추가 사항은 참가기업 개별 부담
- 바이어 매칭 및 수출 상담 지원
- 부스 홍보 지원 (SNS 홍보 및 브랜드 소개 리플렛 제작 등)
- 서울관 총괄 운영 인력 및 통역의 지원
※ 각 참여기업별 전담 통역의가 필요할 경우 개별 부담
- 그밖에 기업별 운송비, 출장자 여행경비, 체재비, 기타 비용은 참가 기업 개별 부담

□ 선정심사 및 선발계획

- 정량평가(30점) : 평가항목에 따라 서울시와 운영사가 절대평가
 - ※ 실적을 증빙하는 자료가 없을 시 평가 항목별 최하점 부여
- 정성평가(70점) :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이 상대평가
 - 심사위원회 구성 : 뷰티산업, 유통수출, 박람회 기획, 마케팅 분야 전문가 5인
 - ※ 항목별 평가 기준(점수 배점)은 최저 수치와 최고 수치를 제외하고 평균화 예정
- 가산점(최대 3점) : 총점 100점 내에서 최대 3점까지 부여
- 합산점수 동일 시 설립일이 최근인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

[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]

정량적 평가 (30점)		정성적 평가 (70점)		
평가항목		배점	평가항목	배점
수출실적	• '22~'24년(최근 3년) 평균 수출액*	10	해외 시장 적합성 (진출시장 트렌드 반영, 마케팅 전략, 글로벌 유통 환경 대응 등 중장기 해외 진출 계획의 적합성)	20
	- 100만불 이상 : 10점			
	- 1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: 9점			
	- 1만불 이상 10만불 미만 : 8점			
참여이력	• '22~'24년(최근 3년) 국외 뷰티 전시·박람회 참여 이력	10	제품 차별성 (독자적 원료, 기능적 우수성, 용기 디자인 및 패키징 독창성 등)	20
	- 3회 이상 : 10점			
	- 2회 : 9점			
	- 1회 : 8점			
수출준비/역량	• 지식재산권 및 해외규격인증 등 보유	10	박람회 부스 운영 역량 (전시 연출방향, 운영인력 배치, 바이어 응대, 현장 프로모션 등 부스 운영계획의 구체성)	20
	- 3개 이상 : 10점			
	- 2개 : 9점			
	- 1개 : 8점			
가산점 (최대 3점)	창업 5년 이내 기업 (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이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)	10	사업 참여의지 (사업 이해도, 신청서 작성의 충실도 등)	10
	하이서울기업*에 등록된 기업 (* https://hiseoul.sba.kr)			
	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(친환경·천연 재료 사용, 비동물실험·비건 인증, 수익·생필품 기부 등)			

※ 수출실적 : 최근 3년('22~'24년) 중 수출 실적이 없는 연도는 평균 계산에서 제외하고 평가

(예시) '22년 실적 없음, '23년 100만불, '24년 200만불인 경우 $(100+200)/2 = 150$ (만불)로 10점 인정

유의사항

- 참가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거나 참가규정 위반 시, 추후 서울시의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에 불응, 제출기일 경과 시 참가신청 포기로 간주함
- 선정이 취소되거나 기업에서 불참하는 경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참가기업 선발 ※ 결원 발생 시, 예비 기업 중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발
- 참가기업 선정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,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사전 바이어 매칭 등 관련하여 홍보용 제품 샘플 제공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
- 선정된 기업은 박람회 기간 현장 상담인력(1인 이상)을 파견하여야 함
- 서울시는 본 지원 사업과 관련해 참여기업과 바이어 간 판매계약 등에 대해 경영적·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, 서울시는 판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함.
- 본 지원사업의 추진일정 및 지원사항은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문의처

- 지원사업 운영사무국(케이스타일허브) : biz@unnispick.com
(010-5816-1474)
-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산업과 : smw422@seoul.go.kr
(02-2133-8790)

향후일정

- 선발결과 발표 : '25. 7월 초(시 홈페이지 공고)
※ 선정된 기업에게는 부스 위치 및 추진사항(장치, 운송 등) 별도 안내
- 박람회 참가 : '25. 11. 12.(수) ~ 14.(금)

- 붙임 1. 모집기업 신청자격 세부조건 1부.
2. 서울시 홍보관 부스 위치 도면 1부.
- 별첨 1. 제출서식 각1부. 끝.

□ 모집대상 : 서울소재 화장품·뷰티테크 중소기업

○ 지역 : 서울특별시 소재(사업자등록증, 본사 소재지 기준)

○ 업 종

① 「화장품법」 제2조의2 (영업의 종류)에 따른 **화장품업**

※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(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)

1. 화장품제조업 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

- 가.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
- 나.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
- 다. 화장품의 포장(1차 포장만 해당한다)을 하는 영업

2. 화장품책임판매업 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

- 가. 화장품제조업자(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)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·판매하는 영업
- 나.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·판매하는 영업
- 다.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·판매하는 영업
- 라. 수입대행형 거래(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)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·수여하는 영업

3. 맞춤형화장품판매업 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

- 가.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
- 나.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

② 통신기계기구·응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**뷰티테크 기업***

* 뷰티테크(Beauty-tech)란 미용(Beauty)과 기술(Technology)이 결합된 용어로, AI, AR, VR, IoT, 빅데이터, 3D프린팅, 얼굴인식 기술, 로봇, 딥러닝, 유전자검사 등 기술을 포함하며 헤어, 피부, 네일, 메이크업 등의 분야에 적용

※뷰티테크 기업 예시

-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바탕으로 AI분석 기반 맞춤형 네일 코스메틱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업체
- 유선통신장비제조업을 바탕으로 맞춤형화장품 구독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용 IoT 피부진단기기를 생산하는 업체
-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바탕으로 피부촬영을 위한 이동형 촬영장치를 생산하는 업체
- 통신기계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컬러 및 패턴이 가능한 1초 타투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업체
- 기타 기술적 요소가 가미된 뷰티테크기업

※ 산업영역 규정 기준 :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 개정분류)에 따름

○ 규 모 :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[별표 1]에 따른 중소기업

[별표1]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(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	
1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	
2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
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4. 1차 금속 제조업	C24		
5. 전기장비 제조업	C28		
6. 가구 제조업	C32		
7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	평균매출액등 1,000억원 이하
8. 광업	B		
9. 식료품 제조업	C10		
10. 담배 제조업	C12		
1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	
1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	
13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
14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	
15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16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	
17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
18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
19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
20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21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	
22. 수도업	E36		
23. 건설업	F		
24. 도매 및 소매업	G		
25. 음료 제조업	C11	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	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
2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
2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29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30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31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	
32. 운수 및 창고업	H	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	
33. 정보통신업	J		
34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	
35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	
36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은 제외한다)	N(N76 제외)		
37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	
39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	
41. 금융 및 보험업	K		
42. 부동산업	L		
43. 임대업	N76		
44. 교육 서비스업	P		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 2.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(C30393),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로 한다.

붙임 2 서울 뷰티 홍보관 부스 위치

- 부스면적 : 72㎡(12m × 6m)
- 부스위치 : 1층 화장품 브랜드 섹터 홀 앞 복도 위치

